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안영수, 배용만, 김경수, 손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한성수, 오새론, 백상현, 이종현, 최명, 양병헌, 정윤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정민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능규, 이성훈, 박기성
채무자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고창현, 유해용, 진상범, 박철희, 전영익, 노재호, 김호용, 김건우, 이금선, 곽정석, 옥경훈

주 문

-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2.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가. 별지 기재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별지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나. 별지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별지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또는,

2.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기재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더라도 별지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기재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별지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별지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2.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4호 및 제5호 의안의 상정을 별지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는 아연괴와 그 부산물 및 비철금속 화합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권자는 2024. 12. 19. 기준 채무자의 보통주식(이하 ‘채무자 주식’이라 한다)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20,703,283주의 약 25.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과 채권자의 특별관계자인 주식회사 C(1,618,32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7.82%), D(721,798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3.49%)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채권자 측은 2024. 12. 19. 기준 채무자 주식 8,481,234주(발행 주식총수의 약 40.97%)를 보유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다. 채권자는 2024. 10. 28. 채무자의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 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 이후 채권자는 2024.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동일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채무자의 이사회는 2024. 12. 3. ‘단순투표를 전제로 한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각주1>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23.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2025. 1. 23.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각주2> 2024. 12. 10. 아래와 같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의 건’(별지 기재 제1-1호 의안과 동일하며, 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소갑 제12호증).

변경 전	변경 후
제29조(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마. 또한 E은 같은 날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E의 집중투표청구를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라 한다).

바. 채무자의 이사회는 E의 주주제안 및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를 받아들여 2024. 12. 23.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 및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제2, 3호 의안(이하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추가로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이사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집
중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내
용의 별지 기재 제4, 5호 의안(이하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이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조건을 정하여 이를 공시하였다(소갑 제13호
증의 2).

사.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자 채무자는 202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
21996호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이 상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정공시를 하였다(소갑 제34호증).

아. 채무자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소갑 제1호증).

채무자 정관

제29조(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
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 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신청취지 제1항 관련

1)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상정된 의안인데,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 역시 상법 및 채무자 정

관을 위반한 것이다.

2) 채권자는 최초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법하게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침해되었다.

3) 채무자가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4)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는 결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권,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의 상정 금지를 구한다.

나. 신청취지 제2항 관련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의 가결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위법한 조건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주주권,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의 가결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단순투표 이사선임 의안의 상정을 구하는 취지로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4.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의안상정금지 가처분)]

1) 피보전권리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규정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즉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요건이 집중투표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집중투표 실시에 관한 요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상법 제382조의2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만약 입법자가 채무자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입법을 하고자 하였다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을 것인데, 현행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명시적으로 주주의 집중투표청구에 관하여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요건을 기재하고 있다). E은 2024. 12. 10.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24. 12. 10. 당시의 채무자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이 사건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조건으로 청구한 것이고, 정관변경 조건부 주주제안이 폭넓게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의 개정을 조건으로 하는 집중투표청구(이하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상법은 집중투표에 관하여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 7에서 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법 규정 어디에도 해당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위 규정이 개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때, 정관변경을 조건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명시적으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단순히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주주제안권 행사에 관한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는 집중투표청구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 제1항과 같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과 같은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조건부 주주제안이 허용된다고 하여 당연히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을 개정하는 의안이 가결된 후 발생하게 된다. 결국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상장회사의 경우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2 제2항(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7 제1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추가적으로 위 상법 제542조의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6주의 기간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편의 또는 현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거래안전, 법정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소수주주의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상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적법한 집중투표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로 이사선임을 한다는 점에서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

382조의2 제1항)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아울러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상법상 집중투표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집중투표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상법 제380조).

2)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권 그 자체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법은 각종 소주주주권(가령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는 이 부분의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 21.

판사 김상훈(재판장) 조정용 장천수

별 지

별지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주제안_ E (주))
- .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주제안_ (주) A)
-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 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 ‘1-6호’ 의안은 제1-3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1-3호 의안 가결 시 자동 폐기됨
- .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명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은 제1-1호 의안 및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 . 제2-1호 의안: 사외이사 G 선임의 건
-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H 선임의 건
-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I 선임의 건

- .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2-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1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2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2-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 .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7명 선임의 건

· 제3-1-2호 의안: 이사 14명 선임의 건

※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명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은 제3-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3-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2-1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3-2-1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2-2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2-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제3-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4명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은 제3-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2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 제3-3-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3-3-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3-3-1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제3-3-2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3-3-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단, (주)이 2024. 12. 30.자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호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1호 의안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본 제4호 의안이 상정됨.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4-2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4-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일괄 상정 및 일괄 표결하고, 만약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선임 가능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이사 수 상한 이내에서 선임함

○ 제5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은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단, 주A이 2024. 12. 30.자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호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1호 의안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본 제5호 의안이 상정됨.

- . 제5-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제5-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5-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5-1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A)

- . 제5-1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6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7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1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20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 제5-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_주)

○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끝.

각주1: 별지 기재 제5-8 내지 제5-21호 의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각주2: E은 2024. 12. 4. 기준 채무자 주식 338,21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63%)를 보유하고 있으며(소갑 제5호증), 채무자의 사내이사인 F이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소갑 제11호증의 1).